

각 서

1. 자격 확인

본인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가입 신청자로서 가입일 현재

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- 가.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(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)
 나.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(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)될 예정인 자로서,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 동 사실을 입증할 것
 다.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(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,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 한함)의 세대원

②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신고소득(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, 사업·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)이 있음을 확약하며, 위 확약내용 및 제출 증빙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동 저축 해지 시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의 우대이율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다.

2. 유의사항

- ① 동 저축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직전년도까지만 적용됩니다.
- ②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가입자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으로 전환신규하는 경우 전환원금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③ 가입일(전환계좌인 경우 전환신규일)로부터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미만 해지 시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④ 동 저축이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되는 경우 통장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- ⑤ 동 저축에 대해 상계 통지가 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자격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- ⑥ 비과세 대상,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릅니다.

20

예금주(본인):

(인)

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(날인)하여 본인의 _____(가족관계 기재)인 _____(성명 기재)을 통해 제출합니다.

예금주(본인):

(인)

대리(수임)인:

(인)

[첨부] 1.①의 가. 해당 시 : 주민등록등본(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의 것)

1.①의 다. 해당 시 : 주민등록등본(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의 것),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최근 과세기간, 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의 것)

동 의 서

본인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가입자로서, 우대이율을 받기 위한 제반 서류(무주택 기간 및 세대주 유지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)를 제출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의 우대이율 대상에서 제외됨(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만 적용됨)에 동의합니다.

20

예금주(본인):

(인)

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(날인)하여 제출합니다.

예금주(본인): _____ (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대리(수입)인: _____ (인)

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

본인은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자로서 가입일 현재

-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(그에 속한 별도 세대 포함)가 없음을 확약하며,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확인용)을 첨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.
-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(그에 속한 별도세대 포함)가 있으며,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가.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확인용)
 나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표시된 것,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)
 다.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아래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○○ 은행 귀중

귀 행과의 수신업무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) 관련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제32조제1항, 제33조 및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18조, 제24조제1항제1호,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0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* 충족 여부 *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[가입자와 그 배우자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(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한다)이며,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]의 세대주
수집·이용할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식별정보 :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(해당 시)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 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■ 가입자 및 그의 세대분리된 배우자(해당 시)의 세대원 정보

<p>보유·이용 기간</p>	<p>위 개인(신용)정보는 금융거래종료일*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수집·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</p> <p>*금융거래종료일이란,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(여·수신, 내·외국환,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)해지 및 서비스(대여금고, 보호예수, 외국 한거래지정,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)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.</p>
<p>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</p>	<p>위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</p>
<p>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</p>	<p>귀 행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(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)</p>
<p>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</p>	<p>귀 행이 이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(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)</p>
<p>2 제공에 관한 사항</p>	
<p>제공받는 자</p>	<p>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</p>
<p>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</p>	<p>가입자 및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 (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포함)의 무주택 확인</p>
<p>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</p>	<p>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 (해당 시)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</p>
<p>제공받은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이용 기간</p>	<p>위 개인(신용)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</p>
<p>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</p>	<p>위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</p>
<p>개인(신용)정보</p>	<p>귀 행이 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

